



월간 뉴스레터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2020년 1월호

Contents

회계정보

-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관련 7대 중점 유의사항

세무 및 법률정보

-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개정
- 최신 세무예규 · 판례
- Tax Tips: 상장주식 대주주 요건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8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Glob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의 뉴스레터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연락처

전화번호 : 02-316-6646(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kr
 Website : www.crowe.kr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회계정보 등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관련 7대
중점 유의사항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관련 7대 중점 유의사항

[출처: 금융감독원, 2019. 12. 31]

I. 개요

□ 금융감독원은 2019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II.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관련 7대 중점 유의사항

비적정의견 방지를
위한 상호협조

1. 비적정의견 방지를 위한 상호협조

□ (지정회사 증가)최근 상장사의 비적정의견이 증가 추세 ('15년:12사,0.6% → '18년 :43사,1.9%)이며 감사인 지정회사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8년 비적정의견) 자유수임 1,998사 중 18사(0.9%), 지정 232사 중 25사(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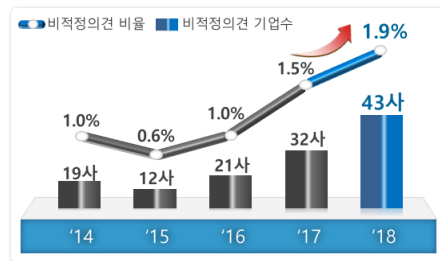
◦기본적으로 재무구조 악화 기업, 관리종목 등 감사위험이 높은 지정회사에 대하여 비적정의견이 증가할 수 있으며,

◦또한 '20년 지정이 예정*된 기업의 경우 감사인이 교체되기 전에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더욱 보수적으로 감사하는 경향이 있음.

*'20년 지정감사인을 해당 사업연도 개시전인 '19.11월 통지

최근 5년간 상장법인 비적정의견 현황

비적정의견 비율 및 기업수



수임형태별 비적정의견 비율



□(엄정한 감사)비적정의견의 주된 사유는 '감사범위제한'*으로, 감사인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데 기인합니다.

*('18 년 비적정의견 사유) 감사범위제한 43 사, 계속기업 불확실성 17 사, 회계기준 위반 1 사 (사유가 다수인 경우 중복 계산)

◦이는 외감법 개정으로 감사인 책임성이 강화되어 감사범위가 확대되고 감사가 엄격히 수행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이며,

◦원칙중심의 IFRS 문언을 엄격하게 적용하거나, 의견 충돌시 회사 회계처리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존재

유의사항

□(회사)현업에서 식별한 회계처리 이슈를 감추려하지 않고, 즉각 감사인과 소통하여 필요한 소명·입증자료를 충실히 제시

◦또한 감사인이 설정한 감사범위에 대해 충분·적합한 감사증거를 시간내에 입수하도록 경영진 차원에서 적극 협조할 필요

□(감사인)분반기검토·중간감사 등의 과정을 통해 입수한 자료·정보를 바탕으로 감사이슈를 선제적으로 진단(No surprise)

◦과도한 자료요구나 책임회피식 의견형성으로 보이지 않도록, 합리적인 위험평가 및 범위설정에 입각하여 감사를 수행할 필요

□(공통)원칙중심의 IFRS 적용시 객관적·합리적 판단과정(Due process)을 거치며, 기재포한 감독지침 및 감리지적사례* 등도 활용

감독지침	개발비('18.9.19.), 비상장주식 공정가치평가('19.3.12.), 장기운송계약('19.4.23.), 물적분할 회계처리('19.12.17.) 관련 감독지침 등
지적사례	회계감리 지적사례 DB 구축 및 공개('19.12.23. 보도) 등

<금감원담당자>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회계심사국 회계심사총괄팀	유형주 수석검사역	3145-7706
	고태욱 선임검사역	3145-7712

회사의 책임하에 재무제표 제출

2. 회사의 책임하에 재무제표 제출

□(제도개요)회사는 직접 작성한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선위 위탁으로 거래소(상장법인) 및 금감원(비상장법인)의 공시시스템에 제출

◦(미제출시 공시)회사가 재무제표를 기한 내 증선위·감사인에 미제출시 그 사유 등의 제출·공시의무를 부과하며,(외감법 §6·§30)

◦(감사인 확인)감사인은 재무제표(감사인·증선위 제출) 상호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미제출 등의 경우 내부회계 미비 여부를 평가*

*「감사전 재무제표 확인 등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18.12 월 시행)

< 외감법 적용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개요 >

구분	세부 내용		
제출대상	☐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및 직전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제출서류	☐ ① 재무상태표, ② (포괄)손익계산서, ③ 자본변동표, ④ 현금흐름표, ⑤ 주식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기준 ①~⑤를 동일하게 제출		
제출처	☐ 상장법인 :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KIND) 비상장법인 : 금감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DART)		
제출시점	☐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포함)를 제출할 때		
	구분		일반회사
	별도(개별)재무제표		정기주총일 6주전*
	연결재무제표		정기주총일 4주전*
		회생절차 진행회사	사업연도종료 후 45일
		사업연도종료 후 60일	사업연도종료 후 90일 (직전연도 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70일)
* 단,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정기주총일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6주전(별도) 또는 4주전(연결)			

※한편, 개정 외감법에서는 회사가 감사인에 재무제표 대리작성 또는 회계자문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여 회사의 책임성 더욱 강화

*중전은 감사인의 금지행위로만 규정

□(점검결과)감사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법제화(’13.12.30.) 이후 위반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제도가 정착되는 모습이나,

***(상장법인)** ’15년: 167사 → ’16년: 49사 → ’17년: 39사**(비상장법인)** ’15년: 계도 → ’16년: 284사 → ’17년:107사

◦여전히 상당수 회사가 기한착오, 작성누락 등으로 이를 미제출·지연제출하여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부과받는 상황입니다.

유의사항

□(회사) 회계전문인력 총원 등 자체적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법정기한* 내 제출 필요

*법정기한 계산시 초일(주총일)은 불산입하고 역으로 계산해야함에 특히 유의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미제출시 그 사유를 증선위에 제출(상장법인)하거나 공시(사업보고서 제출법인)해야 하고,

◦제출 후 적절한 내부통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정할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비적정으로 될 수 있음에 유의

◦또한, 감사인에게 재무제표(주식 포함) 대리 작성을 요구하거나 회계처리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하는 행위도 금지

□(감사인) 관련 회계감사 실무지침에 따라 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 확인, 재무제표 최종 확정 절차 검토 등에 더욱 주의 필요

<금감원담당자>

구분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상장법인*	회계심사국 회계심사총괄팀	배형석 감사역	3145-7715
비상장법인	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	홍동균 선임감사역	3145-7294

오류를 최소화하되,
사후 발견시 즉시
정정

3. 오류를 최소화하되, 사후 발견시 즉시 정정

□(정정 현황)최근 상장사의 감사보고서 정정횟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유가증권 시장 등 대형사의 정정도 큰 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장법인 전체)'16 년: 150 회 → '17 년: 327 회 → '18 년: 380 회(유가증권 시장) '16 년: 49 회 → '17 년: 99 회 → '18 년: 151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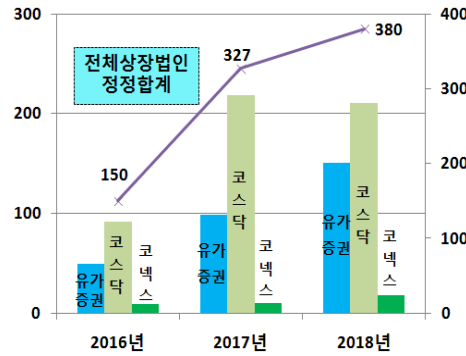
◦정정회사 중 상당수(46%)는 정정시점에 감사인이 변경된 상태로, 이는 감사인 교체시에 더 많이 정정되는 경향*을 나타내는바,

*감사인 변경비율 : 상장사 전체 21.1% vs. 정정회사 4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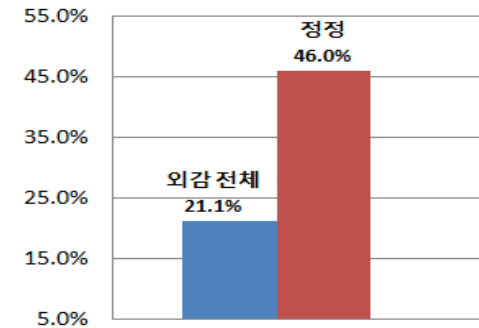
◦향후 감사인 지정제 강화 등으로 감사인 교체가 늘어날 경우 정정이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상존

<최근 3 개년간 상장법인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상장법인 정정횟수



정정회사 중 감사인 변경비율



□(계도위주 감독)감독당국은 회사의 정정금액이 중요성 금액의 4 배 이상이거나,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정정한 경우(외감규정 §23① iii)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합니다.

◦회사가 타당한 근거로 정정하거나 회계위반에 대한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무제표 심사 미실시

◦정정사항이 단순 오류 등 과실에 의한 비반복적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감리를 실시하지 않고 경고·주의 등 계도로 신속 종결

-다만, 정정사항이 중과실·고의에 의한 분식회계 등과 연계된 경우 집중 감리를 통해 과징금 등 강화된 조치 부과 가능

유의사항

□(공통)정확한 회계정보의 유통을 위해, 결산 회계처리 및 기말감사를 더욱 철저히 수행하여 오류 발생을 미리 방지할 필요

□(회사)결산 과정에서 과거 재무제표에 포함된 오류 발견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정하여 선의의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

◦특히 단순 오류를 신속 수정할 경우 계도로 종결 가능한 반면, 위반을 인지하고도 미수정시 이후 중조치될 수 있는 점에 유의

□(감사인)회사가 오류를 수정하거나,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감사기준 및 실무지침*을 준수하여,

*한공회 「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실무지침(2019년 개정, '19.11.20.)」

◦관련 절차 및 협의를 충실히 실시하고 최종 의견 불일치시 당기감사인이 반드시 그 사실과 이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재

<금감원담당자>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회계조사국 회계조사기획팀	이재훈 수석감사역	3145-7295
	홍동균 선임감사역	3145-7294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준비 철저

4.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준비 철저

□상장사는 '19 년 사업연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 시점 : '19 년 사업연도(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2 조원 이상) → '20 년(5 천억원 ~2 조원) → '22 년(1 천억원 ~5 천억원) → '23 년(1 천억원 미만)

❶(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신뢰성 있게 작성·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설계·운영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부분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비고	설명		
대상	상장사 + 직전 사업연도 자산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		
운영	대표이사가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내부회계관리자(상근임원)를 지정하여 운영		
검증	내부	대표자	자체 운영실태 점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감사 (감사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외부	외부감사인	감사(상장사) 또는 검토(비상장사) 등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검증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보고서)

❷(감사의 의미)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며, 기존의 검토보다 강화된 절차 요구

- (검토절차)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하여 담당자와의 질문 위주의 검증절차를 수행하고, 검증대상을 회사가 자체점검한 '운영실태보고서'로 한정

- (감사절차)감사인은 질문 외에 문서검사, 재수행, 관찰 등 보다 엄격한 검증절차를 수행하고, 그 대상도 '운영실태보고서' 외에 내부통제 자체로 확대

❸(해외사례)'04 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상장사의 경우 '18 년 비적정의견 비율은 6.0% 수준*

*미국은 결산 및 공시절차(43.6%),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24.5%), 전산통제(18.1%), 업무분장(13.8%)의 순으로 미비점을 보고

유의사항

- (회사)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재정비·보완하는 등 외부감사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
- (감사인)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과 감사 FAQ 등을 참고하여 감사절차를 실시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충실히 문서화할 필요

<금감원담당자>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회계관리국 기업회계팀	김경민 선임조사역	3145-7973

핵심감사사항의
충실한 기재 및
철저한 감사수행

5. 핵심감사사항의 충실한 기재 및 철저한 감사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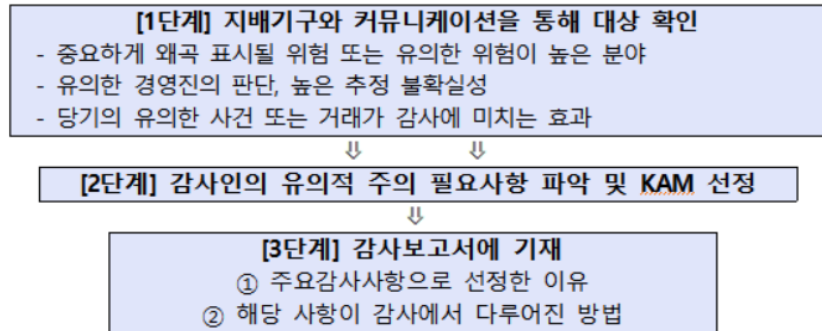
상장사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이하 'KAM')을 선정하고 선정이유 및 관련 감사절차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회계감사기준서 701(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참고] 핵심감사사항이란?

(의미)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한(most significant) 사건들에 대해 감사인이 전문가적 판단에 따라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에서 선택된 것으로, 감사수행과정에서 유의하게 감사인의 주의를 요구하는 것임

<핵심감사사항선정 및 기재>



(적용대상·시기) 상장사(코넥스 제외), '20년 감사보고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대상(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법인)*	시행일
·자산 2 조원 이상	2018년 12월 15일
·자산 1 천억원 이상 2 조원 미만	2019년 12월 15일
·자산 1 천억원 미만	2020년 12월 15일

*자산 규모는 전년말 개별(별도)재무제표 기준

□('18년 기재실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KAM 도입 첫 해에 손상검토, 수익인식, 공정가치 등 주로 감사 위험이 높고 경영진의 판단과 추정치를 포함하는 항목을 KAM 으로 선정합니다.

◦ 이를 통해 회사와 감사인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주요 회계이슈에 대한 재무제표 이용자와의 정보 공유 등 긍정적 효과도 나타난 반면,

◦ KAM 선정 수가 비교적 적고(연결 평균 1.76 개, 별도 평균 1.45 개), 다소 형식적이거나 표준화된 KAM 기재 사례도 존재

[참고] 해외의 KAM 기재사례

□핵심감사제를 먼저 시행한 유럽 등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평균 2 개~6 개*의 항목을 선정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

*영국의 경우 회계법인별로 평균 3.1~6.0 개, 싱가포르의 경우 전체 평균 2.3 개 등

◦KAM 선정 주제는 주로 자산손상, 수익 인식, 영업권 및 유·무형자산 손상, 공정가치 평가 등 경영진의 추정과 판단이 개입되는 사항이 대부분

유의사항

□(감사인)회사와의 실효성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각 회사의 상황에 특정되는 구체적인 KAM 을 선정하여 엄정한 감사를 실시하고,

◦재무제표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회사의 KAM 관련 사항을 감사보고서에 구체적이며 명료하게 설명할 필요*

*KAM 이 없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할 것이며, 만약 KAM 이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도 이를 감사보고서에 별도 단락으로 기술하여야 함

□(회사)지배기구와 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감사인이 선정한 KAM 에 대해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사인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 필요

<금감원담당자>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회계관리국 기업회계팀	이지선 선임조사역	3145-7972

**중점점검 회계이슈에 6. 중점점검 회계이슈에 대한 검토사항
대한 검토사항**

□금감원은 최근 회계의혹, 감리사례 및 전문가 설문 등을 감안하여 '20 년도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 점검할 4 가지 회계이슈를 선정·예고하였습니다.

◦'19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 실시 예정



(회사·감사인)중점 점검 회계이슈가 존재하는 경우 회사·감사인은 관련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❶ **新리시기준 회계처리** : 상세 제시된 지침의 적용 및 강화된 주석공시 등에 유의하고, 재무영향 공시를 충실하게 작성
- ❷ **총당부채·우발부채 등 회계처리** : 총당부채·금융보증 등 인식·측정의 적정성 및 우발부채 등의 주석공시 누락 가능성에 주의
- ❸ **장기공사계약(건설·조선 이외 분야 중심) 등 회계처리** : 진행기준 적용 여부, 진행률 측정 등 판단·추정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 ❹ **유동·비유동 분류 회계처리** : 회사의 유동성과 지급능력 상태가 적절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유동자산·부채의 분류에 유의

<금감원담당자>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회계기획관리실 기획관리총괄팀	김준홍 선임검사역	3145-7866

회계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

7. 회계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

□(과징금)외감법규에 과징금 부과근거 및 부과기준이 마련되어 시행(' 18. 11. 1.)됨으로써, 종전보다 과징금 부과가능 금액 및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 ❶ (부과금액)외감법상 과징금은 회사에 대하여 회계기준 위반금액 20%를 한도로 부과 가능하고, 절대금액 한도가 없음

< 회계위반 과징금 부과 한도 >

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
위반금액의 20%	회사 부과과징금의 10% (보수 등 금전적 보상금액의 5 배 이내)	감사보수의 5 배

- ❷(범위 확대)외감법에서는 모든 감사보고서 관련 부실감사(고의, 중과실)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가능*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은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감사보고서와 관련한 부실감사에 대하여만 부과 가능

□(고의·중대 위반에 대한 조치 강화)회사의 고의 위반에 대한 조치범위를 확대하였고, 중대한 위반 적발시 회사 임원 및 회계법인에 대한 보다 중한 책임을 부과합니다.

❶(고의 위반)회사의 고의적 회계위반사항*은 중요성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위반금액이 50 억원 이상인 경우

*위반내용이 비자금 조성, 횡령·배임, 자금세탁 등과 관련되거나, 위반사항 수정시 상장진입요건 미달·상장되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

-과징금(또는 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임원 해임(면직) 권고, 직무정지 6 월 이내, 검찰통보 등의 조치가 가능

❷(중대 위반)회사의 고의 및 중과실 위반 적발시 임원 및 감사(감사위원)에 대한 해임에 추가하여 직무정지(6 월 이내) 조치가 가능하고

-중대한 감사부실*이 품질관리업무 설계·운영의 중대한 소홀에 기인한 경우에는 회계법인 대표이사 및 품질관리업무 담당 이사에 대하여 직무일부정지 조치가 가능
 상장법인 등의 감사업무 수행이사에게 등록취소 또는 1 년 이상 직무정지 조치를 하는 경우

□(회계감사 충실성 유도)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이 적발되지 않더라도 감사인이 중요한 감사절차를 합리적 근거 없이 생략하거나 현저히 미흡하게 실시한 경우,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 가능합니다.

*공인회계사에 대한 기본조치: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4 시간 등

유의사항

□ (회사)고의 및 중대한 위반이 적발될 경우 상당한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고, 임원 등에 대하여도 과징금 또는 직무정지 등 보다 무거운 조치가 가능한바,

◦회계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검증절차 등을 강화할 필요

□ (감사인)품질관리 업무체계를 충실히 설계·운영하여 중요한 감사절차를 누락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며,

◦감사계획·과정 등의 합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문서화 필요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회계심사국 회계심사총괄팀	윤지혜 수석감사역	3145-7728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30

세무 및 법률정보 등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개정

‘19.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

□ 기획재정부는 '19.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0.1.6.~1.28),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순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국기령 §43 의 3)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input type="checkbox"/> 연 2.1%* *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재부령으로 정함 <단서 신설>	<input type="checkbox"/> 국세환급금 지연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 적용 <input type="checkbox"/> (좌 동) - 다만, 조세불복 인용 확정일로부터 40일 이후 국세환급금 지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1.5배 적용

<개정이유> 조속한 국세환급금 지급 유도를 통한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세환급금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총급여액요건 완화(소득령 §17)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기준 -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 * 봉급·급료·보수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등으로 받는 급여를 뺀 금액 - (총급여액) 직전 과세기간 2,5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한도: 연간 240만원	<input type="checkbox"/> 비과세 기준 완화 - (좌 동) - 2,500만원 → 3,000만원 이하 <input type="checkbox"/> (좌 동)

<개정이유>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총급여 요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 분부터 적용

3.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자금 대여이익 제외(소득령 §38 제 7 호)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의 범위 ○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임차 자금을 저리·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포함	<input type="checkbox"/>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추가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임차 자금 대여 이익은 제외 * 구체적 요건은 시행규칙으로 규정

<개정이유>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 분부터 적용

4.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하는 국내 필요경비의 인정 요건 완화(소득령 §179⑦, 법인령 §132⑦)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계산 방법 * 예납적 원천징수(지급금액의 20%) 후 종합과세 ○ 국내 기업이 비거주자 등의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항공료·숙박비·식사대는 비용 인정 - 다만, 항공·숙박·음식업자 에게 직접 지급한 비용만 인정	<input type="checkbox"/>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 요건 완화 ○ (좌 동) <삭 제> ※ 국내 기업 외에 인적용역을 제공한 비거주자 등이 항공·숙박·음식업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도 인정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5.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법인령 §19의 2①, 소득령 §55②)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한 채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등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 20만원 이하인 소액 채권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등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width: 100px; height: 100px; margin: 10px auto;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좌 동)</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만원 → 30만원 ○ 중소기업 외상매출금으로서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제외

<개정이유> 대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 등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6.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시 가산이자율 인하(법인령 §136④)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외국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예외) 기한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고기한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유) 본점 등 결산 미확정 등 - (절차) 60일 이내 신고기한연장승인신청 후 관할 세무서장이 7일 이내 승인 결정 - (가산이자율) 연 9.1%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준용) <p>※ 내국법인 가산이자율 : 연 2.1%</p>	<p><input type="checkbox"/> 기한 연장 시 가산이자율 인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연 2.1%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준용) <p>* 국기령(§43의3②)에 따른 이자율</p>

<개정이유> 내·외국법인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기한의 연장승인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7. 영세율 대상 외화획득용역에 투자자문업 추가(부가령 §33②)

현 행	개 정 안
<p><input type="checkbox"/> 국내에서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공급하는 외화획득 재화.용역은 영세율 적용</p> <p>○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상호주의를 적용</p> <p>- 전문서비스업*</p> <p>*법무(변호사, 변리사, 법무사업) 회계 및 세무(회계사, 세무사업) 광고업, 시장조사업, 경영컨설팅업</p> <p>-사업지원서비스업*</p> <p>*인력공급.고용알선업, 사무지원서비스업 등</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input type="checkbox"/> 상호주의 적용대상 추가</p> <p style="text-align: center;">- 금융지원 서비스업 중 투자자문업</p>

<개정이유> 유사 용역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0.7.1.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8. 예정고지제도 적용대상 법인사업자 범위 규정(부가령 §90④)

< 법 개정내용(§48③) >

<p><input type="checkbox"/> 예정고지 대상에 영세 법인사업자 추가</p> <p>○ 적용대상 법인사업자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p>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input type="checkbox"/> 예정고지 대상 법인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p> <p>○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5억원 미만</p>

<개정이유>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한 신고부담 완화

<적용시기> '21.1.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9.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부가령 §87②)

현 행	개 정 안
<input type="checkbox"/>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손사유)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대손금 ○ (대손세액) 대손금액 × 10/110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 (적용기한) 공급일부터 5년 이내 대손 확정 	<input type="checkbox"/> 대손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padding: 0 10px; margin: 10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일부터 5년 → 10년이내로 연장

<개정이유>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사업자 세부담 완화

* (예) 판결, 재판상 청구, 압류 등으로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연장됨에 따라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10. 우회거래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 기준 마련(국조령 §3 의 2 신설)

< 법 개정내용(§2 의 2) >

<input type="checkbox"/> 국제거래에서의 실질과세원칙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조세부담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감소하는 우회거래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조세회피 목적 없음을 입증 * 우회거래 금액 및 국내 조세부담 감소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지 않을 경우 직접거래한 것으로 보아 조세조약 및 국조법을 적용(실질과세원칙)

현 행	개 정 안
<신 설>	<input type="checkbox"/> 입증책임이 전환되는 조세부담 감소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조세부담이 50% 이상 감소 * (계산방식) 거래의 실질에 따른 국내 조세부담 대비 우회거래에 따른 국내 조세부담 감소액 비교 <input type="checkbox"/> 적용제외 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조세부담 감소액) 1 억원 미만 ○ (우회거래 금액) 10 억원 미만 <input type="checkbox"/> 기타 세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조세의 범위) 소득세 및 법인세, 그 밖에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이 되는 조세 ○ (시행규칙 위임) 그 밖에 국내 조세부담 감소 계산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이유> 우회거래의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적용시기> '20.1.1.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11. 저부가가치 용역에 대한 간소화된 정상가격 계산방식 도입(국조령 §6 의 2②, ③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 그룹내 저부가가치용역에 대한 간소화*된 정상가격 산출방법</p> <p>* (원칙) ①비교가능제3자가격방법, ②재판매가격방법, ③원가가산방법, ④이익분할방법, ⑤거래순이익률방법 중 합리적인 방법 택일</p> <p>○ (저부가가치용역)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의 용역거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법률자문·인사관리 등 지원성격의 용역으로서 그룹의 핵심사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것 - 용역의 내용이 다음에 해당하지 않을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 제조·판매·원재료의 구입, 마케팅 ▪ 금융, 보험 및 재보험 ▪ 천연자원의 채굴·탐사·가공 - 용역 제공 과정에서 독특하고 가치 있는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창출하지 않을 것 - 용역 제공 과정에서 용역제공자가 중요한 위험을 부담하거나 관리하지 않을 것 - 특수관계 없는 제3자와 해당 용역과 유사한 내용의 용역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p>○ (정상가격) 원가에 5%를 가산한 금액</p> <p>○ (증빙서류) 납세자는 해당 용역이 저부가가치용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추가로* 보관·비치</p> <p>* (현행) 용역의 제공 사실·기대효과·혜택 및 적정가격 산출(원가 계산서 포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보관·비치</p> <p>○ (적용예외) 해당 과세연도에 저부가가치 용역거래금액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일정수준 초과시</p>

<개정이유>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외소재 본점에 공급하는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939, 2020.01.10)

(사실관계)

- 신청법인(또는“국내지점”)은 미국법인(이하“미국본점”)의 국내지점이며 미국본점은 고객에게 ACMI 및 Charter 서비스 등을 통해 국제 항공 화물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ACMI 서비스는 Aircraft(항공기), Crew(승무원), Maintenance(유지보수), Insurance(보험)을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고객은 연료 등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며
 - Charter 서비스는 비행기 전세 계약 서비스로서 고객에게 Crew를 포함한 전세 항공기를 제공하고 고객은 연료비, 보험비, Landing 관련 요금 등 고정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임.
- ACMI/Charter 계약을 통해 고객은 항공화물운송 비즈니스와 관련하여 운항보수, 연료비, 수요 관련 변동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 비행기 보유로 인한 잠재적 자본위험이나 재고, 유지 보수 또는 인력과 관련하여 책임 없이 전용 화물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국내지점에는 두 명의 엔지니어가 본점의 ACMI/Charter 서비스를 위하여 현장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본점과 국내지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음.

미국본점	국내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과의 계약협상 및 체결(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포함) - 미국에서 인증한 항공기 운항 - 항공기 운항 및 유지를 위해 승무원 및 행정직원 고용 - ACMI/Charter 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 (보수청구 및 회수 등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점의 항공기가 국내 도착 시 유지보수 활동 제공 - 항공기 유지 보수를 위한 부품의 보관 - 국내 체류 중 승무원 지원을 위한 행정 서비스 제공

(질의요지)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 소재 본점을 위해 한국에서 현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 소재 본점이 국내외 고객에게 국제 항공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항공기 관련 부품의 보관용역, 항공기 국내에 도착 시 항공기 유지보수 용역, 국내 체류 중인 승무원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수행하는 의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제12조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외의 수탁가 공사업자에게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 후 완제품을 국외에서 다른 외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원재료의 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자 간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완제품 공급가액 전부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31, 2019.12.31)

(사실관계)

- 신청법인(또는 “갑”)은 전자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국내사업자로 다른 국내사업자(이하 “을”)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갑은 발주 받은 재화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외현지법인(이하 “병”)에게 원 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한 후 해당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 고 을이 지정하는 국외사업자 정에게 인도하였으며 을은 갑에게 제품 공급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였음.

(질의요지)

- 신청법인이 국내사업자 “을”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해외현지법 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 후 완제품을 “을”이 지정한 다른 외 국법인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
 - 1) 가공용 원재료의 반출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여부
 - 2) 국내사업자 간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금액

(회신)

국내사업자(갑)이 국내사업자(을)과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료를 대가 없이 국내에서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병)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외사업자(정)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갑과 을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갑은 을에게 해당 재화의 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Tax Tips:
상장주식 대주주요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기준 및 FAQ

-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대주주를 제외한 소액주주는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비과세 됩니다. 대주주 요건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도말이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많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상장주식 대주주요건과 관련하여 법에서 정하는 기준 및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 대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합니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기준(종목별 지분율, 보유액)				
구분	'18.4월 이전	'20.4월 이전	'21.4월 이전	'21.4월 이후
코스피	1% or 25억원	1% or 15억원	1% or 10억원	1% or 3억원
코스닥	2% or 20억원	2% or 15억원	2% or 10억원	2% or 3억원
코넥스	4% or 10억원	좌동	좌동	4% or 3억원

Q1. 2019년 12월 31일 현재 A주식을 13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2020년에 A주식에 대해 대주주 기준인 10억원을 넘는 3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가?

A1. 2020년에 A주식을 양도하는 수량 전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

만약 2020년에 A주식 보유수량 전체를 매도하였다면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1주도 매도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다.

Q2. 2019년 11월 현재 B주식을 15억원 보유하고 있다. 2019년에 대주주가 되지 않기 위해 10억 미만으로 보유수량을 조절하려고 하는데 언제까지 매도해야 할까?

A2. 주식의 취득·양도 시기는 잔금청산일 즉, 결제일이다.

대주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 수량을 줄여야 한다면 매도 후 결제까지 2영업일이 소요되므로 폐장일의 2영업일 전까지 장내에서 매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2019년 폐장일이 12월 30일이라면 12월 26일까지 매도해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12월 26일에 보유하고 있는 수량에 2019년 연말 최종시세 가액인 12월 30일 종가가 반영되므로 12월 26일에 수량을 10억원에 정확히 맞췄다 하더라도 27일, 30일 이틀간 주가가 오르는 경우 시가총액 10억원을 넘겨 대주주가 될 수 있다.

Q3. 코스닥 상장 C주식을 2019년 12월 31일 현재 1.9%(시가총액 10억원 미만) 보유하고 있다. 2020년 1월에 추가 매수로 2.1%를 보유하게 된 경우 2020년에 대주주에 해당할까?

A3. 지분율 요건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말에 요건 미만으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과세연도 중 한번이라도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그 해 연도 말까지 대주주에 해당한다.

위의 경우 2.1%를 보유하게 된 그 날부터 매도하는 수량에 대해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한다. 만약 2020년 상반기에 C주식을 매도하여 코스닥 대주주요건인 2% 미만이 되었다 하더라도 2020년 말까지 대주주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Q4. 2019년 12월 31일 현재 D주식을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수량을 합산하여 10억원 이상 보유하여 대주주에 해당한다.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매도분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

A4. 양도소득세는 각자 신고한다.

2020년에 본인만 매도하였다면 본인만 신고,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매도하였다면 각각 신고해야 한다.

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본인과 특수관계자들의 수량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하지만, 양도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는 세금이므로 신고는 본인의 양도차익에 대해 각각 계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Q5. 코스닥 상장 E주식을 2019년 12월 31일 현재 8억원(지분율 0.1%)을 보유하고 있다. 같은 종목을 아들이 1억원, 며느리가 2억원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인 및 그 가족들이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궁금하다.

A5. 대주주 요건 판단 시 합산되는 특수관계자는 양도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이 매도하는 경우 본인과 아들의 수량을 합산하여 판단해야 한다. [본인+아들=9억원]이므로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며느리는 인척이므로 대주주 요건 판단 시 합산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아들이 해당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는 본인, 직계존속(아버지), 배우자 보유 수량을 모두 합산하여야 하므로 [본인+아버지+배우자=11억원]이므로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Q6.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어 2020년 과세대상인 내국인이 2020년에 해당 주식을 매도하였다. 신고 및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될까?

A6. 주식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다.

1월1일~6월30일 양도분 : 8월 31일

7월1일~12월31일 양도분 : 다음해 2월 28일(29일)

하반기 양도세 신고시 상반기 예정신고한 내역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데, 만약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고 상반기 양도분과 하반기 양도분에 대해 각각 예정신고한 경우 양도한 해의 그 다음해 5월 말일까지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Q7. F주식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어 2020년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었다. 동일인이 보유한 G주식의 경우 2020년에 소액주주에 해당하는데 현재 손실이 많이 난 상태이다. 2020년 F주식과 G주식 모두 매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F주식의 이익과 G주식의 손실을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을까?

A7. 상장주식을 매도했을 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는 대주주이거나, 장외 양도한 경우이다.

F주식은 대주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장내·외 거래를 불문하고 무조건 과세대상이 된다. 하지만 G주식의 경우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비과세되기 때문에 F주식의 이익과 G주식의 손실을 통산할 수 없다. 만약,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G주식을 장외에서 매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이런 경우 G주식의 손실을 F주식의 이익에 통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1월~12월 까지 양도하는 분을 합산하여 계산하므로 서로 다른 해에 양도하는 경우는 통산할 수 없다.

* 위 사례의 주식은 모두 상장주식, 12월말 결산법인이며 최대주주는 아니라고 가정함.

업 무 소 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 ▪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 ▪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 ▪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 ▪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 ▪ 조직, 인사 전략 / HR ▪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 ▪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 ▪ M&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 ▪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 ▪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 ▪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 ▪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 ▪ PI / CRM / Risk Management 등
문의처	<p>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p> <p>TEL: (02) 316-6646,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kr</p>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LLC is a member of Crowe Global, a Swiss veren. Each member firm of Crowe Glob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Glob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Global or any other Crowe Global member.